

[별표 16]

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(제62조제2항관련)

배출공정	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
1.야적(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 한한다.)	가.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.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/3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, 최고저장 높이의 1.25배이상의 방진망(막)을 설치할 것. 다만, 토목건설공사장·건물건설공사장·조경공사장·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경계에는 높이 1.8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, 2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.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~10%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것(고철 및 곡물야적장의 경우를 제외한다) 라.가. 내지 다.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. 내지 다.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.
2.싣기 및 내리기(분체상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에 한한다)	가.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(더스트부스트)를 설치할 것(석탄제품제조업, 제철·제강업 또는 곡물 하역업에 한한다). 나.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(살수반경 5m이상, 수압 3kg / cm²이상)을 설치·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할 것(곡물작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). 다.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라.가. 내지 다.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. 내지 다.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.
3.수송(토사운송업의 경우에는 가·나·바 및 사의 경우에 한한다)	가.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흠림이 없도록할 것 나.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.도로가 비포장시설도로인 경우 비포장시설도로로부터 반경 500m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락으로부터 반경 1km이내는 포장할 것 라.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(1)자동식 세륜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살수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(2)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-수조의 넓이:수송차량의 1.2배이상 -수조의 깊이:20cm이상 -수조의 길이:수송차량 전장의 2배이상 -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마.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-살수높이 :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-살수길이 : 수송차량 전장의 1.5배이상 -살수압 : 3kg / cm²이상 바.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면지가 흠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20km이하로 운행할것 아.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자.가. 내지 아.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. 내지 아.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

4.이 송	가.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나.이송시설은 낙하, 입출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.기계적(벨트콘베아, 바켓엘리베이터등)인 방법은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할 것 라.가. 내지 다.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. 내지 다.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.
5.채광·채취	가.살수시설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.발파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등을 덮거나 적절한 방진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를 실시할 것 다.분체상물질등 비산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라.가. 내지 다.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. 내지 다.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.
6.야외절단	가.고철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나.야외절단시 인근 주위에 간이칸막이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.야외절단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라.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(강선수선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인 경우에는 10m이상)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.가. 내지 라.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. 내지 라.중 그 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.
7.야외탈청	가.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것 나.야외작업시에는 간이칸막이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.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라.작업후 잔여물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.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(강선수선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인 경우에는 10m이상)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바.가. 내지 마.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하는 경우에는 가. 내지 마.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.
8.야외연마	가.야외작업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·운영할 것 나.야외작업시 작업부위 높이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다.작업후 잔여물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.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(강선수선업과 합성수지선의 건조업 또는 수선업인 경우에는 10m이상)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마.가. 내지 라.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. 내지 라.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.
9.야외도장(강선건조수리업과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한한다)	가.소형구조물(길이 10m이하에 한한다)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하고 적정량의 외부공기를 흡입하여 회석 배출할 것 나.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.25배 이상의 방진망(개구율 40%상당)을 설치할 것 다.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 할것(도장작업위치가 높이5m이상이며, 풍속이 평균초속 5m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) 라.가. 내지 다.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. 내지 다.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.
10.기타공정(건물건설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에 한한다)	가.건물건설공사장에서 건물의 내부공사를 하는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할 것 (1)5층이상 건물인 경우 방진막·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할 것 (2)4층이하 건물인 경우 1일 1회이상 살수할 것 나.건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·방진벽 또는 방진망을 설치할 것 다.가. 및 나.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 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. 또는 나.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

비고 : 분체상물질이라 함은 토사·석탄·시멘트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.